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19
----------	-------

발의연월일 : 2025. 9. 18.

발 의 자 : 정춘생 · 황운하 · 이해민
윤종오 · 박은정 · 김준형
김선민 · 백선희 · 차규근
최혁진 · 한창민 · 서왕진
신장식 · 모경중 · 김동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 보유·임차하고 있는 회전익항공기(이하 “헬기”라 한다)는 화재 진화 등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동원·투입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헬기의 일괄 동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

이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하여도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헬기를 독자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헬기가 투입되지 않거나 뒤늦게 투입되는 등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보유·임차하고 있는 헬기의 동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헬기의 적시활용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

은 조 제3항 및 제51조제4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0조부터”를 “이 조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회전익항공기(이하 “헬기”라 한다)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회전익항공기(이하 이 항에서 “헬기”라 한다)를”을 “헬기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 ----- ----- -----이 조부터----- ----- ----- ----- -----.
1. ~ 3.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회전익항공기(이하 “헬기”라 한다)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후단 신설>	③ ----- ----- ----- ----- ----- ----- ----- -----.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

제51조(긴급구조) ① ~ ③ (생략) ④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u>회전익항공기(이하 이 항에서 “헬기”라 한다)</u>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헬기의 운항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u>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u> 제51조(긴급구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헬기</u>----- ----- ----- ----- ----- -----.
---	--